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0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어선·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액감면 (임미매 의원안, 박형수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 2

Ⅰ. 개요

1.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50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9.

(3) 회 부 일 : 2025. 9.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는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다 지난해 갑자기 부과하여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감척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어업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어선·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액감면 (임미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현 행	임미애의원안	박형수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정동만의원안
□ <신 설>	□ 폐업지원금 비과세조항 신설(안 제104조의36) ○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 어로어업 재개시 감면세액 추징(상속의 경우 제외) ○ 2018년 1월 1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부터 소급적용(부칙 제2조)	□ 폐업지원금 비과세조항 신설(안 제104조의36) ○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 어로어업 재개시 감면세액 추징(상속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2018년 1월 1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부터 소급적용(부칙 제2조)	□ 폐업지원금 비과세조항 신설(안 제104조의36) ○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급적용(부칙 제2조)	□ 폐업지원금 비과세조항 신설(안 제104조의36) ○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소급적용(부칙 제2조)

* 임미애의원안 2025. 7. 22. 발의(의안번호 11632), 박형수의원안 2025. 7. 24. 발의(의안번호 11696), 문금주의원안 2025.8.27. 발의(의안번호 12449), 정동만의원안 2025.8.29. 발의(의안번호 12508)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등을 의미함.[1)]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근해어선의 수 및 어획량이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어선·어구의 감축을 추진하는 사업임.

감축대상 어선·어구로 선정되면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치[2)], 어선원 생활안정자금[3)] 등을 지원받게 되고, 직권감척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에 따

---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수산업법」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40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3) 실직어선원에 대해 통상임금의 최대 6개월분 한도로 지원

른 신규융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유 지원의 제한조치[4]가 이루어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13척의 연·근해어업에 대한 감척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기간 폐업지원금 3,471억 5,800만원, 매입지원금 2,488억 6,700만원 등 총 5,960억 2,500만원의 지원금이 교부되었음.

[어선·어구에 대한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척, 백만원)

업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근해어선감척수	2	13	53	86	67	65	82	368
폐업지원금	1,229	4,423	21,959	58,009	58,403	46,163	82,980	273,166
매입지원금	660	7,632	30,458	42,212	30,694	40,058	60,568	212,282
합계	1,889	12,055	52,417	100,221	89,097	86,221	143,548	485,448
연안어업감척수	292	360	176	109	117	207	184	1,445
폐업지원금	7,972	14,771	7,699	5,585	10,379	16,294	11,292	73,992
매입지원금	5,097	5,567	4,139	3,096	4,284	6,906	7,496	36,585
합계	13,069	20,338	11,838	8,681	14,663	23,200	18,788	110,577
근해 연안어업 감척 수	294	373	229	195	184	272	266	1,813
폐업지원금	9,201	19,194	29,658	63,594	68,782	62,457	94,272	347,158
매입지원금	5,757	13,199	34,597	45,308	34,978	46,964	68,064	248,867
합계	14,958	32,393	64,255	108,902	103,760	109,421	162,336	596,025

자료: 법안 비용추계서,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한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5]되고 있음.

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어선·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수산업법」 제93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5) 국세청은 동 폐업지원금을 무체재산권 양도대가로 보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음.(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474, 2022.11.10.)

□ 4건의 개정안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한시적(임미매의원안, 박형수의원안, 정동만의원안) 또는 영구적(문금주의원안)으로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다음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있음.

첫째, 구조개선 정책 집행의 속도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정부가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그에 따른 폐업·퇴출 보상금에 과세를 유지할 경우, 세후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당사자의 참여 유인이 저하되고 구조조정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사실상 정부가 개인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를 제약하여 “시장에서의 퇴출”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에 대해 세제상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세금이라는 추가적 장벽을 제거할 경우 해당 업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어선감축은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율 저조로 인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많은데, 개정안과 같이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면 폐업지원금 관련 어업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자발적 감축 또는 직권감축에 따른 협조 유인을 제고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

둘째, 세후 실수령액이 명확해짐에 따라 보상수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강화되고, 보상금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납세비용 및 불복 대응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징세 및 납세 관련

비용을 저감할 수 있음.

셋째, 고령층 및 영세사업자들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실수령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며, 부채 정리·전업·재취업 등 폐업 이후의 연착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참고로, 어선·어구 감축이 촉진되면 과도한 어선·어구로부터 유발되는 어족자원의 부족, 어선사고의 발생 및 탄소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파생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공익목적 여부, 지급 주체 등과 무관하게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6)]

둘째, 다른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살처분 보상금, 「공익사업법」 상 보상금 등 다른 보상금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되며 별도로 세액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어선 · 어구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수령한 어선 · 어구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하

6) 기획재정부의 의견임.

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경우 임미애의원안의 경우 4년간 1,597억원(연평균 399억원), 박형수의원안의 경우 1,042억원(연평균 260억원), 정동만의원안의 경우 11년간 3,127억원(연평균 284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개정안에 따른 세수추계 내역]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누적	평균
임미애 의원안	△942	△219	△219	△219	-	-	-	-	-	-	△1,597	△399
박형수 의원안	△614	△143	△143	△143	-	-	-	-	-	-	△1,042	△260
정동만 의원안	△942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219	△3,127	△284

문 의 처
02)6788-5149